사 천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선람	기관의장

공보

제483호 2017. 1. 5(목)

고 시

○ 사천시 고시 제2017-1호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승인 사항 고시 ---------- 2

공 고

○ 사천시 공고 제2017-20호 소하천공사 시행 허가(연장) 공고 ---------- 4

회람										

발행 : 사천시 / 편집 : 공보감사담당관 / ☎ 831-2216 / FAX 831-6012

고 시

사천시 고시 제 2017 - 1호

공유수면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승인 사항 고시
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승인 사항을 고시합니다.

2017. 1. 5.

사 천 시 장

1. 점용·사용 허가번호(허가일자) : 제2016-6 (2016.10.31.)
2.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·주소
   - ○ 성 명 : (사)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경남지부 최해용 외 1[(주)퍼스트 마린가이드]
   - ○ 주 소 : 경남 창원시 진해구 천자로 160(덕산동)
3. 점용·사용의 목적(공사내용)
   - ○ 조종면허시험 업무와 수상레저사업을 위한 부잔교 설치
     (부교 1개소 : 12m*6m, 잔교 1개소 : 10m*1.3m)
4. 점용·사용(공사)의 장소
   - ○ 경남 사천시 대포동 457-12번지 지선 공유수면
5.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승인사항
   - ○ 승인번호 : 제2016-7 (2016. 12. 20.)
   - ○ 공사기간 : 2017. 1. 1.~ 2017. 10. 31.
6.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승인일자 : 2016. 12. 20.
7.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승인 조건
   - ○ 점용·사용 허가조건에 대한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,

이외 개별법에 정한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절차를 이행한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.

○ 실시계획승인확인증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, 실시계획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
공 고

■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[별지 제12호서식] <개정 2012.3.5>

소하천공사 시행 허가[연장] 공고

공고 제2017- 20호

「소하천정비법 시행령」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(「소하천정비법」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, 「소하천정비법 시행령」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)에 따라 소하천공사 시행(소하천의 점용·사용)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7년 1월 5 일

사 천 시 장

시행자 (점용·사용자)	상호 및 명칭	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		
	대표자 (성 명)	이**	주소	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** (초량동)
소하천명		초량소하천		
공사(점용·사용) 개요	위치	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초량리~봉계리 일원		
	면적	14,196㎡	폐천부지(廢川敷地) 예상 면적	-
	기간	당초 : 2015.12 ~ 2016.12.31 변경 : 2015.12 ~ 2017.12.31		
	목적 및 사유	「하동~완사2 국도건설공사」와 관련한 초량소하천 정비		

열람서류

1. 실시설계도서
2. 위치도(축척 5만분의 1 지형도)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